

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6 - 138호

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,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2016. 10. 5.
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

보관교부지 지정

1. 지정 지역 :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치도길 452 (상수치 마을)
2. 우편물 교부장소 :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치도길 255 (원수치 마을)

부 칙

이 공고는 2016. 10. 10.(월)부터 시행한다.